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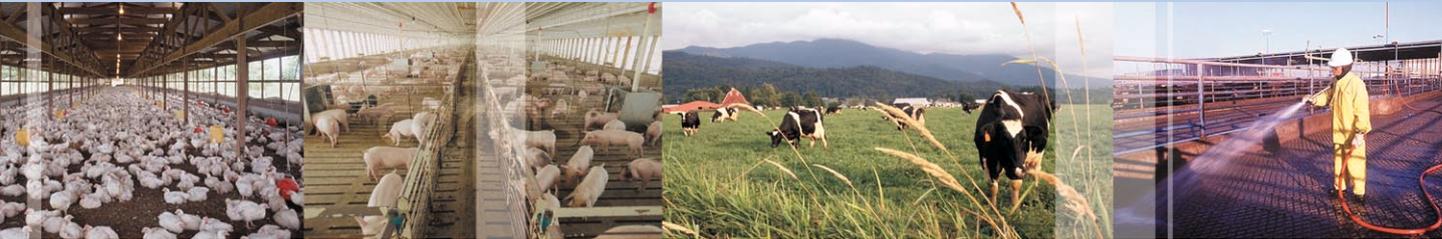


1. 가축 사육농가 공통사항

(1) 축주 및 관리자의 방역의무	01
(2) 차단방역 기본수칙	02
(3) 소독실시 요령	03
(4)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04
(5)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관리 요령	06
(6) 황사 발생시 농장의 방역관리	07

2. 축종별 사육농가 방역 준수사항

(1) 소 사육농가	08
(2) 돼지 사육농가	13
(3) 닭·오리 사육농가	17



3. 축산관련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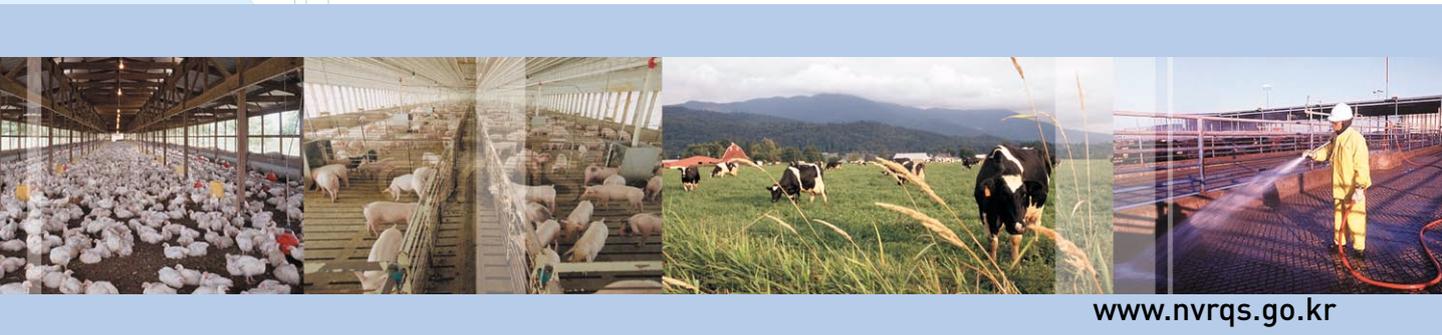
- (1) 축산관련 시설의 준수 사항 22
- (2) 축산관련 시설의 개별 준수 사항 24

4. 축산농가 출입차량

- (1) 가축·원유·동물약품 등
운반차량 운전자의 방역의무 31
- (2) 소독실시 요령 32

부록

- 1.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35
- 2. 시·도가축 방역기관 연락처 43



www.nvrqs.go.kr

1 가축 사육농가 공통사항

(1) 축주 및 관리자의 방역의무

▶ 가축전염병 예방조치

-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함(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 소독 시설 및 설비

-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가축사육시설 300㎡ 이하 제외)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소독실시 세부요령은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에 따라 실시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300㎡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소독기구 등을 이용하여 소독하여야 함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역학조사 협조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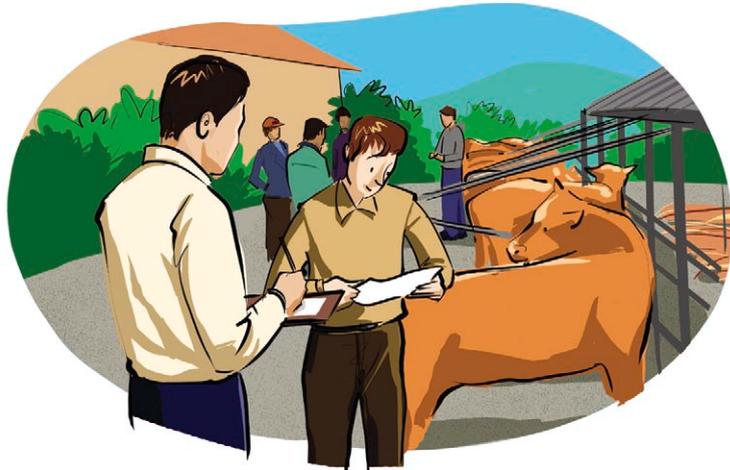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기록관리 의무

- 가축의 거래 시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법 제16조)
 - ※거래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함(법 제17조제5항)
 -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 ※소독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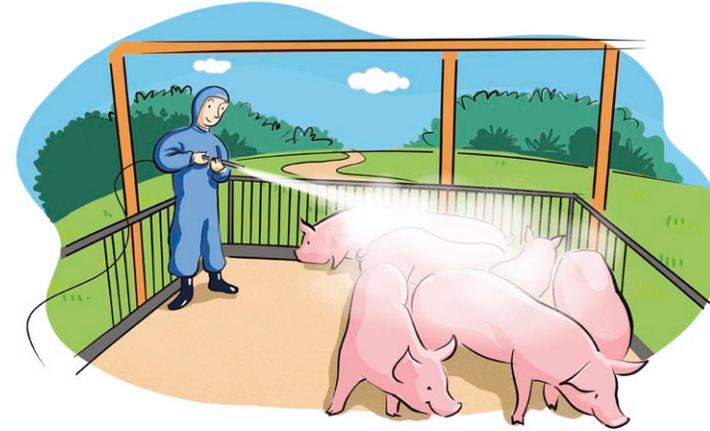
(2) 차단방역 기본수칙

-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개인소지품의 철저한 확인과 소독, 외출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방역교육을 실시
- 남은 음식물의 사용을 자제(소는 금지)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급여
- 파리, 모기 등 해충과 쥐가 각종 전염병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살충·구서를 철저하게 실시
- 사육중인 가축에서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읍/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를 늦게 할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을 적게 받음

(3) 소독실시 요령

▶ 소독실시 관련규정

- 가축사육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소독실시 세부요령은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에 따라 실시
 -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됨



-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철저(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됨

▶ 소독실시 요령

- 농장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일 또는 1일 수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소독을 실시
- 축사 출입 시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
- 분변, 오줌, 사료 등에 대하여는 청소를 실시한 다음 천정,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를 소독하고, 축사 출입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철저히 소독하여야 함
- 소독약은 적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

▶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한 동시에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예” 생석회(알칼리제제)를 도포한 곳에 산성제제의 소독약을 살포하지 않아야 함
-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킬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차량 외부소독은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하고, 차량 내부도 발판·운전대·좌석등 오염 가능 부분을 소독할 것
-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신고대상(법 제11조)

-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신고 시의 참고사항〉

- 농장 내 많은 가축이 갑자기 사료를 먹지 않고 침울할 때
- 농장 내 많은 가축이 갑자기 죽거나 폐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 농장 내 많은 가축이 갑자기 심한 소화기, 호흡기 또는 신경증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증세가 확산될 때
- 입, 입술, 혀, 콧등, 발굽 및 유두 등에 물집(수포) 또는 딱지가 나타나며 고열을 동반하는 소, 돼지, 염소, 양, 사슴 등 우제류 동물(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이 발견되는 경우
- 환경에 민감하고 불안해하며 또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설 수 없는 소 및 사슴이 발견되는 경우
- 농장 내 젖소, 한우 및 돼지가 갑자기 유산 또는 사산하는 등 번식장애 피해가 있을 때
- 농장 내 많은 돼지가 갑자기 고열, 식욕부진, 무리지어 포개짐, 움직이기 싫어하는 증상을 보일 때
- 농장 내 많은 닭(오리)이 갑자기 고열, 식욕부진, 급격한 산란저하,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며 많이 죽을 때
- 해외약성전염병 또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된 경우 등

▶ 신고내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 신고대상 가축 소유자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 장소
-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 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신고처

-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
 -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상급 기관에 보고
- 신고 전화번호 : 지역 구분 없이 1588-4060(시·군) 또는 1588-9060(검역원)
- ※1588-4060은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통화는 불가. 1588-9060은 휴대폰 통화 가능

(5)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관리 요령

▶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시 축주의 준수사항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신분 확인 및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방역요령
 -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을 것
 - 채용이 성사되면 그 장소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 실시
 -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 등 음식물은 폐기·소각
 -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 용구에 대하여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 농장 근무 시 방역관리 요령
 - 농장의 청결유지, 소독 철저,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준수사항 교육
 - 농장 출입 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의복과 신발 착용
 - 농장주변 정리 등 업무 수행 후에는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방역교육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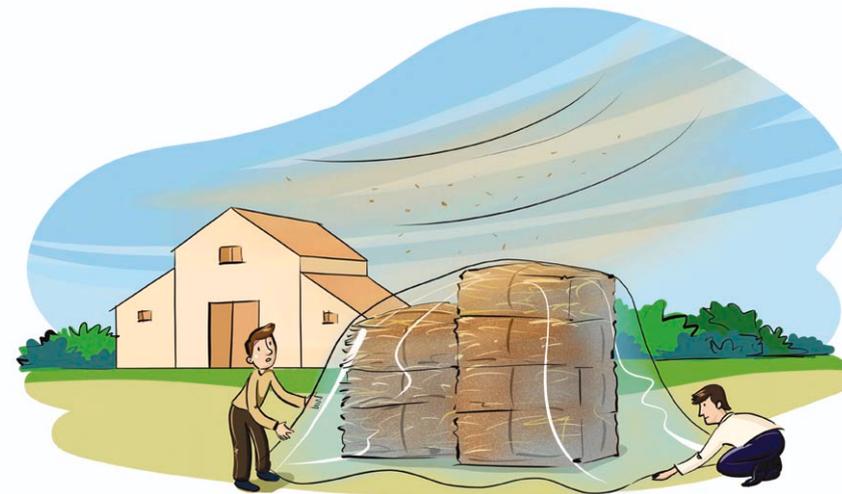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 외국인 근로자가 타 농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방문 금지
 - 휴일 등 외출 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파악 기록관리하고 농장 밖에서 소독 후 출입하도록 방역조치
 -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친지·친구를 만날 때에는 시내 등 농장 외부에서 만나도록 조치

6) 황사 발생시 농장의 방역관리

▶ 황사 발생시 농가방역관리 수칙

- 황사가 발생하면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의 공기와 가능한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킬 것
-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조·뽕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을 것
-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에 대하여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 겨울철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솔이나 브러시로 털어낸 후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보온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봄철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몸체를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할 것(축체에는 구연산제제 등 무해한 소독제를 사용)
- 황사가 끝난 후부터 1~2주간 환축 발생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것



2 축종별 사육농가 방역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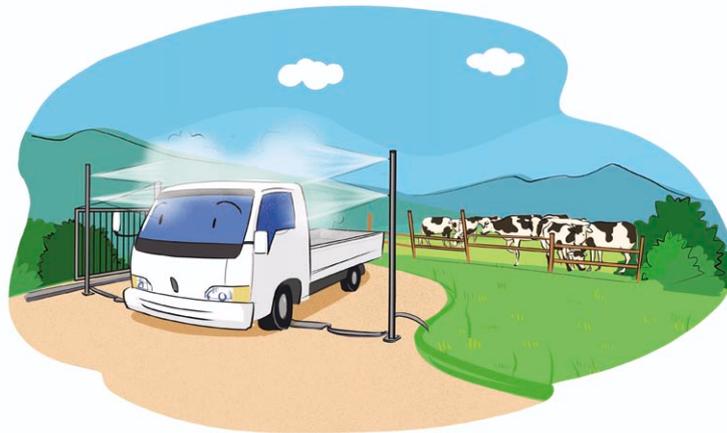
(1) 소 사육농가

▶ 소독시설 구비

- 300m²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축주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목장 출입구에 차량 및 물품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설치
- 농장 또는 축사의 출입구에 방문자의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 차단방역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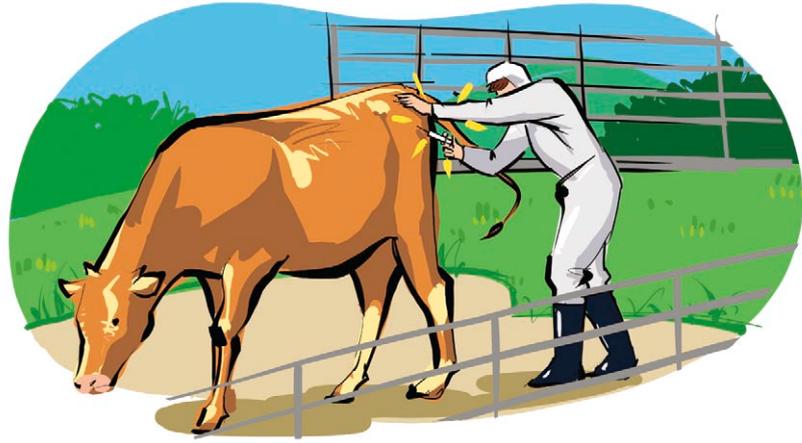
- 목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 실시
- 외출 후 귀가 시 소독을 실시한 다음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농장내로 출입
- 외부인이 축주 또는 관리자를 만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농장 밖에서 만남
- 축사의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신발 등에 소독 실시
- 목장의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도 소독 실시
- 농장에 출입하는 물품(기구 등) 및 사료·원유·동물약품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 소독 실시
-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기록부에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



〈질병별 예방접종 프로그램〉

질병별	접종시기	접종부위 및 접종량	
탄저(생균)	봄철 방목 전 연 1회 접종	피하주사 : 소(1ml), 양(0.5ml)	
기증저(생균)	봄철 방목 전 연 1회 접종	피하주사 : 소(1ml)	
탄저+기증저(생균)	봄철 방목 전 연 1회 접종	피하주사 : 소(2ml), 양(1ml)	
부루세라병(생균)	4~8개월된 소 1회	피하주사 : 소(1ml)	
대장균감염증(사균)	건강한 임신우 2회 접종 (1차 : 분만 8주전, 2차 : 분만 2~3주전, 매 분만 2~3주전 추가 접종)	경부근육 : 소(매회 2ml)	
파스튜렐라감염증(사균) 로타바이러스+	건강한 소에 1회 접종, 연 1회 추가접종 건강한 임신우 2회 접종	근육주사 : 소(2m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생독)	(1차 : 분만 6주전, 2차 : 분만 4주전)	근육주사 : 소(2ml)	
광견병	생독	5개월령 이상동물 1회 접종, 매년 1회 추가 접종	근육주사 : 소(3ml)
	불활화	1회 접종, 매3년 추가 접종	피하/근육주사 : 소(1ml)
아까바네병	생독	모기발생 전 1회 접종, 매년 1회 추가접종	피하주사 : 소(1ml)
	불활화	건강한 6개월령 이상된 소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매년 모기출현 전 1회 추가접종	근육주사 : 소(3ml)
유행열	생독	모기발생 전 1회 접종, 매년 1회 추가접종	근육 또는 피하주사 : 소(1 or 2ml)
	불활화	건강한 6개월령 이상된 소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매년 모기출현 전 1회 추가접종	근육주사 : 소(3ml)
이바라기병(불활화)	건강한 6개월령 이상된 소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매년 모기출현 전 1회 추가접종	근육주사 : 소(3ml)	
소전염성비기관염(불활화)	3개월 이상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근육주사 : 소(3ml)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바이러스성설사병(불활화)	3개월 이상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근육주사 : 소(5ml) 근육주사 : 소(5ml)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바이러스성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불활화)	3개월 이상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바이러스성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소합포체성페렴(불활화)	건강한 소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연 1회 추가 접종	근육주사 : 소(5ml)	
타일레리아병(불활화)	진드기에 노출된 적이 없는 소에 4주간 2회 접종(2월과 4월)	근육/피하 주사 : 소(2ml)	

※근거 자료출처 :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 예방접종 요령

-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이 중요
- 가축질병별 표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 탄저·기종저, 소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바라기병 등 각종 전염성 질병 예방약은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

▶ 하절기 소 질병 예방관리요령

- 열사병 등 하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차양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축체에 수시로 냉수를 살포하여 열사병 예방
 - 축사 내부가 통풍이 잘되도록 환풍기 설치·가동
 - 축사(벽,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 유지
 - 열사병 발생시 수액·영양제 주사, 충분한 량의 깨끗한 물 공급
- 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바라기병 등 모기매개성 질병 예방
 - 축사주위 물웅덩이를 제거하여 모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
 - 축사에 아주 세밀한 방충망 또는 모기유인등 설치, 구충 실시
 - 질병별로 접종시기에 맞추어 철저하게 예방접종 실시
 - 의심축 발견 시 개업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유방염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 축사 주변 및 운동장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한 환경을 방지

- 파리모기 등에 대하여 구충을 실시하고 운동장을 철저히 소독하여 유방염의 원인균을 제거
- 착유 전·후에 유두를 세척·침지 소독하여 세균오염 방지
- 유방내 응고물 및 독소 제거를 위한 세척실시와 소염제 주사
- 유방염균에 대한 감수성 검사 및 효능 있는 약제로 치료실시
- 전신성 유방염의 경우 수액 및 전해질 등 공급
- 소 기립불능증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 고온·다습한 경우 선풍기나 팬을 이용한 강제 환기를 실시
 -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방목 금지 및 차양막 설치
 - 축사 내외부와 주변 웅덩이 소독 및 모기유인등 설치
 - 사육 단계별 권장사료를 급여하고 곰팡이가 끼거나 오래 보관된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
 - 신선한 물을 공급하고 예방차원에서 비타민 복합제 및 칼슘·소금 등 미량광물질 급여

▶ 겨울철 소 질병 예방관리

- 동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축사 실내의 온도를 유지
 - 축사에 발생한 탄산가스, 암모니아 가스 등이 환기될 수 있도록 적당하게 통풍 실시
 - 축사 내 습도가 적당하게 유지되도록 축사관리
 - 사료, 물 등 충분한 량을 공급하고, 다양한 영양소 제공
 - 추운 날씨에 소독조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독 실시



- 소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 소의 비강점막이나 기관지점막을 자극하는 유해가스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의 습도 및 환기관리 유지
 - 축사 내 분뇨와 분뇨에 오염된 깔짚은 수시로 제거하고 건조된 깔짚으로 교체
 - 스트레스 방지 및 축사 내 공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육밀도가 높지 않도록 유지

▶ 임상관찰 요령

-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침울한 상태를 보이거나, 기립이 어려운 개체가 있는지 등 외형적으로 관찰
- 식욕부진을 보이거나 음수량이 급격하게 줄거나 증가한 개체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찰
- 되새김질을 약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정상체온보다 높은 개체가 있는지 관찰
- 침, 코, 오줌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너무 적게 나오는지, 분변의 상태가 설사 또는 연변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유심히 관찰
- 입, 코, 발굽 주위 등에 수포 또는 딱지가 있는지 관찰
- 기침 또는 호흡수가 증가하거나 헐떡거리고 흉식호흡을 하지 않고 복식호흡을 하는지 관찰
- 임신한 소에서 유산 또는 사산이 있는지 관찰
- 전염병으로 의심되거나 원인을 잘 모르는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신고

▶ 소 구입시 확인사항

- 판매농가의 주소, 성명을 확인하고 질병 발생상황을 파악
 - 중개상인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중개상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기록할 것
- 구입 소에 대한 예방접종사항, 결핵병·부루세라병 등 검진증명서 확인
 - 구입한 소는 2주 이상 격리사육하면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방역 기관에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진을 의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합사

(2) 돼지 사육농가

▶ 소독시설 구비

-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소유자등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농장 출입구에 차량 및 물품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설치
 - 농장 또는 축사의 출입구에 방문자의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 차단방역 요령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 실시
- 외출 후 귀가 시 소독을 실시한 다음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농장내로 출입
- 외부인이 축주 또는 관리자를 만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농장 밖에서 만남
- 축사의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의복, 손, 신발 등에 소독 실시
- 농장의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도 소독 실시
- 농장에 출입하는 물품(기구 등) 및 사료·동물약품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 소독 실시
-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기록부에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

▶ 예방접종 요령

-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이 중요
- 돼지 질병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 돼지콜레라·돼지단독 등 예방약은 접종 일령 및 시기 등에 맞추어 적기에 예방접종



〈질병별 예방접종 프로그램〉

질병별	자돈 및 육성돈		모돈(임신돈)		접종부위 및 접종량
	출산 후(주령)		종부전(주)	분만전(주)	
	4	6 9 12	6 4 2	9 6 4 2	
돼지콜레라 (생독)	초유전 6~7주 8~10주 (긴급시) (1차) (2차)		2~4주(연 1회)		근육주사 : 1ml
돼지오제스키병 (생독)	7~10주 (1차) 10~12주(2차)				근육주사 : 1~2ml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생독)	3~18주 (1회)		3~4주(1회)		근육주사 : 2ml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불활화)	3~4주(1차) 6~7주(2차)		4~5주 2주 (1차) (2차)		근육주사 : 2ml
전염성위장염+로타바이러스감염증(생독)					근육주사 : 2ml
유행성설사(생독)					근육주사 : 2ml
유행성설사(불활화)			후보돈 (3주 간격 2회)		근육주사 : 3ml
전염성위장염+유행성설사 (생독, 불활화)			생독4~5주(1차) 2~3주(2차) (초산돈) 생독 종부전 (1회) (경산돈)		근육주사 -생독 : 2ml -불활화 : 3ml
돼지일본 뇌염(생독)	연령무관 4주간격으로 2회 접종(모기출현 이전)				근육/피하주사 : 2ml
돼지파보바이러스 감염증(불활화)			2~4주(초산돈)		근육주사 : 초산 (5ml), 경산(2ml)
돼지파보바이러스 감염증(유전자재조합)			분만 후 이유시 (경산돈)		근육주사 : 1ml
돼지뇌심근염 (불활화)			4주전 2주전 (1차) (2차) 종부 2주전 (경산돈)		근육주사 : 2ml
돼지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불활화)	4주 간격 2회 접종				근육주사 : 2ml
돼지단독(생균)	8주(1차) 12주(2차)				피하주사 : 1ml
대장균감염증 (사균)			4~6주 2~3주 (1차) (2차)		피하주사 : 2ml
돼지마이코플라스마병(사균)	1~2주(1차) 3~4주(2차)				근육주사 : 2ml
위축성비염, 홍막 폐렴, 파스튜렐라 폐렴(사균)	3주(1차) 5주(2차) 성돈(2~3월 간격 2회)		4주 2주 (1차) (2차)		근육주사 : 2ml

※근거 자료출처 :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 돈사 종류별 중점 방역관리 사항

- 분만사 방역관리 사항
 - 철저히 올-인 올-아웃을 시행하며, 돈군의 이동 후에는 돈사를 세척·소독하고 청결을 유지
 - 모돈은 청결하게 유지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만 전에는 구충과 질병의 치료 또는 사전에 예방
 - 초유는 분만 후 빠른 시간 내에(늦어도 6시간 이내에) 충분히 먹도록 도와줄 것
 - 양자관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하며 분만 24시간 이내에 실시
- 이유사 방역관리 사항
 - 가급적 축사 또는 돈방 사이는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튼튼한 칸막이 설치
 - 자돈을 신규로 입식할 경우 철저히 올-인 올-아웃 시행
 - 사육밀도가 1㎡당 3두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여 밀사 방지
 - 적절한 급식기 공간 확보(개체간 공간거리를 최소 7cm 이상)
 - 신선한 환경조성을 위한 돈사 내 지속적 환기 유지(암모니아 10ppm이하, 이산화탄소 0.15%이하)
 - 돈사 내 최상의 적정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 동일하게 생산된 돈군의 다른 자돈과 혼합사육을 금지
- 육성, 비육사 방역관리 사항
 - 가급적 축사 또는 돈방 사이를 견고한 이음새가 없는 차단벽을 설치하여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올-인 올-아웃 시행
 - 이유 돈방의 사육 돈군을 육성사로 그대로 옮김
 - 육성사에서 비육사(출하기)로 옮길 때 혼합 사육 금지
 - 평당 약 4.5두 정도가 유지되도록 하여 밀사를 방지하고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돈사 환기 유지
- 기타 방역관리 사항
 - 돈사 내 적절한 환기 유지 및 동물이동에 따른 스트레스 방지
 - 거세, 주사 등을 실시할 때 소독 철저 및 출입구 소독조 운용 등 위생관리 철저

▶ 하절기 돼지질병 예방관리

- 열사병 등 하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축사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돼지에 수시로 냉수를 살포하여 열사병 예방
 - 축사 내부가 통풍이 잘되도록 환풍기 설치·가동
 - 축사(벽,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 유지
 - 열사병 발생시 수액·영양제 투여, 충분한 량의 신선한 물 공급

- 살모넬라증 및 대장균성 설사증 등 예방관리
 - 돈사 내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
 - 발병한 돼지는 격리하거나 치료하고, 위축돈은 도태하여 제거
 - 돼지가 출하된 후 돈사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여 건조시킨 다음 돼지 입식이 바람직함 (일정기간 경과 후 입식)
 - 분만사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신생 자돈에 충분한 초유 급여
 - 분만 전 모돈에 대장균 백신접종으로 자돈에 수동면역 부여
 - 탈수 방지를 위한 전해질 공급
 - 원인체인 대장균에 대한 약제 선발 및 3~5일간 치료제 투여

▶ 겨울철 돼지질병 예방관리

- 동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돈사 내 온도 유지
 - 돈사에 발생한 탄산가스, 암모니아 가스 등이 환기될 수 있도록 적당한 통풍 실시
 - 돈사 내 적당한 상대습도 유지
 - 충분한 사료와 물 공급 및 영양관리 철저
 - 소독조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기적인 소독 실시
- 돼지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 돼지의 비강점막이나 기관지점막을 자극하는 유해가스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의 적절한 온도, 습도 및 환기 관리 유지
 - 스트레스 방지 및 돈사 내 공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밀사 엄금

▶ 임상관찰 요령

-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침울한 상태 또는 여러마리가 포개어 있거나, 기립이 어려운 개체가 있는지 등 외형적으로 관찰
- 사료를 잘 먹지 않거나 음수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 관찰
- 정상체온보다 높은 개체가 있는지 관찰
- 침, 코를 너무 많이 흘리거나 너무 적게 나오는지, 분변의 상태가 설사, 연변 또는 변비 등을 보이는데 대하여 유심히 관찰
- 입, 코, 유방, 발굽 주위 등에 수포 또는 딱지가 있는지 관찰

- 기침 또는 호흡수가 증가하거나 헐떡거리고, 복식호흡을 하는지 관찰
- 임신한 모돈의 경우 유산, 사산이 있는지 관찰
- 전염병으로 의심되거나 원인을 잘 모르는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신고

▶ 돼지 구입 시 확인사항

- 판매농가의 주소, 성명을 확인하고 질병 발생상황을 파악
 - 중개상인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중개상인의 주소와 차량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기록



- 구입 돼지에 대하여는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 사항과 검사내용을 확인
- 구입한 돼지는 2주 이상 격리사육하면서 세밀히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 이 기간에 필요한 예방접종과 구충 등을 실시

(3) 닭·오리 사육농가

▶ 소독시설 구비

-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축주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농장 출입구에 차량 및 물품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설치
 - 농장 또는 계사의 출입구에 방문자의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 차단방역 요령

- 농장 또는 계사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기자재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통제, 소독 실시
 - 사료·계란·동물약품 운반차량, 닭 수송차량 및 일반 차량의 농장으로 이동과 농장 안에서 이동의 통제와 제한
 - 가급적 벌크 사료를 사용하며 운전자의 계사 출입을 통제
- 계사의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의복, 손, 신발 등에 소독 실시
 - 농장관리인, 수의사 등 농장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도 소독 철저
-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기록부에 철저하게 기록하고 보존



▶ 예방접종 요령

- 뉴캐슬병 등 닭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백신의 특성에 따라 접종시기 및 횟수 등을 맞추어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등 오리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백신의 특성에 따라 접종시기 및 횟수 등을 맞추어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닭 질병별 예방접종 프로그램〉

질병별	접종시기 및 접종방법		
	육계	산란계	종계
뉴캐슬병	1차:1일령(생독분무, 부화장) 2차:10일령(생독 분무/음수/점안) 3차:3주령(생독 분무/음수/점안)	1차:1일령(생독분무, 부화장) 2차:10일령(생독분무/음수/점안) 3차:3~4주령(생독분무/음수/점안) 4차:7~8주령(생독라스타 혹은 불활화) 5차:산란4주전(불활화 오일백신)	1차:1일령(생독분무, 부화장) 2차:10일령(생독분무/음수/점안) 3차:3~4주령(생독분무/음수/점안) 4차:7~8주령(생독라스타 혹은 불활화) 5차:산란4주전(불활화 오일백신)
※위험농장은 1-7일령에 불활화 오일백신 추가접종			
전염성후두기관염		1차 : 4-6주(점안접종) 2차 : 12-16주령(점안접종)	1차 : 4-6주(점안접종) 2차 : 12-16주령(점안접종)
※발생위험이 높은 농장은 2-3주령에 1차 점안접종			
전염성기관지염	1일령(생독분무/점안)	1차 : 1일령(생독분무/점안) 2차 : 6-8주령(생독음수) 3차 : 산란4주전(불활화 오일)	1차 : 1일령(생독분무/점안) 2차 : 6-8주령(생독음수) 3차 : 산란 4주전(불활화오일)
전염성F낭병	1차 : 10-14일령(생독) 2차 : 3주령(생독)	1차 : 3주령(생독 음수) 2차 : 5주령(생독 음수)	1차 : 10-14일령(생독) 2차 : 3-4주령(생독) 3차 : 산란 4주전(불활화오일)
마렉병		1일령 (피하 또는 근육)	1일령 (피하 또는 근육)
계두		3주령 미만 : 단침 접종 ※단침접종 시 10-14주령에 쌍침으로 추가접종 3주령 이상 : 쌍침 접종	3주령 미만 : 단침 접종 ※단침접종 시 10-14주령에 쌍침으로 추가접종 3주령 이상 : 쌍침 접종
※접종일령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나 모기출현(하절기)이전 접종			
닭뇌척수염		10-12주령(생독 음수)	10-12주령(생독 음수)
※산란중이거나 산란개시 4주 이내에는 접종금지			
가금티프스		1차 : 6주령(생균) 2차 : 18주령(생균 또는 불활화)	

※근거 자료출처 :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 닭·오리 사육시 방역관리 주의사항

- 동시 입추-출해(올-인 올-아웃)의 형태로 사육하고 일령이 다른 계군과는 합사되지 않도록 주의
- 농장 내에 가급적 동일 축종만 사육하고, 야생조수가 계사 내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
- 농장은 다른 농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
- 건강한 증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를 사육하여 수직전파(난계대 전염) 전염병을 예방

▶ 하절기 닭·오리 질병 예방관리

- 열사병 등 하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축사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계사에 수시로 냉수를 살포하여 열사병을 예방
 - 축사 내부가 통풍이 잘되도록 환풍기 설치·가동
 - 축사(벽,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를 유지
 - 열사병 발생시 영양제 공급하고, 충분한 량의 물과 영양분을 제공
-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예방관리
 - 양계장내 외부인·차량 통제 및 소독 철저
 - 성계와 병아리는 격리 사육
 - 추백리·가금티프스에 감염되지 않은 종계장으로부터 병아리를 구입하여 난계대전염병 감염을 차단
 - 출처가 불분명한 중병아리 구입 금지
 - 농장 내에 쥐가 서식하지 않도록 구서를 실시하고, 계사도구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 추백리·가금티프스의 전염원인인 감염된 분변의 관리 철저
 - 방역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약제를 선별하여 치료

▶ 겨울철 조류질병 예방관리

- 동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계사 내 적정 온도 유지
 - 계사에 발생한 탄산가스, 암모니아가스 등이 배출되도록 환기관리 철저
 - 계사 내 적정한 상대습도 유지·관리
 - 충분한 사료와 물 공급 및 영양관리 철저
 - 소독조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기적인 소독 실시

- 닭·오리의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 비강점막이나 기관지점막을 자극하는 유해가스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의 환기관리 철저
- 계사 내 분뇨는 수시로 제거하고 소독 실시
- 스트레스와 계사 내 공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육밀도가 높지 않도록 유지

▶ 임상관찰 요령

-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침울한 상태를 보이거나, 기립이 어려운 개체가 있는지 등 외부소견을 세밀하게 관찰
- 급격하게 폐사가 늘거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있는지 관찰
- 식욕부진을 보이거나 음수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 관찰
- 산란율 저하가 있는지, 정상 체온보다 높은 개체가 있는지 관찰
- 분변의 상태가 설사, 연변, 녹색변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찰
- 전염병으로 의심되거나 원인을 잘 모르는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신고

▶ 닭·오리 및 종란 구입 시 확인사항

- 판매농가의 주소, 성명을 확인하고 질병 발생상태를 파악
 - 중개상인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중개상인의 주소, 전화 및 차량번호 등 연락처를 파악·기록 유지
- 구입 닭에 대한 뉴캐슬병 예방접종유무 확인(확인서)
- 구입한 가금은 세밀히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3 축산관련 시설

(1) 축산관련 시설의 준수사항

▶ 소독시설 설비 대상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됨



▶ 축산관련 시설의 차단방역 기본수칙

-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
- 사육중이거나 계류 중인 가축에서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읍/면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모기, 파리 등 해충과 쥐가 질병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살충·구서를 철저히 실시

▶ 소독실시관련 규정

- 가축사육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소독실시 세부요령은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에 따라 실시
※소독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토록 규정
- 소독실시 대상자는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부는 1년간 보관(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소독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토록 규정

▶ 소독설비 설치 공통기준

-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함
※300~1,000㎡ 가축사육시설은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로 대체가 가능
-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함

▶ 소독요령

- 시설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소독을 실시
- 농장 출입 시 반드시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고 축사 출입전에 소독을 철저히 실시
- 시설 또는 차량은 분변, 오줌, 사료 등을 철저히 청소를 실시한 다음 천정,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를 소독하고 축사 출입구 및 주변지역 또한 빠짐없이 소독하여야 함
- 소독약은 적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

▶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한 동시에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예” 생석회(알칼리제제)를 도포한 곳에 산성제제의 소독약을 살포하지 않아야 함
-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킬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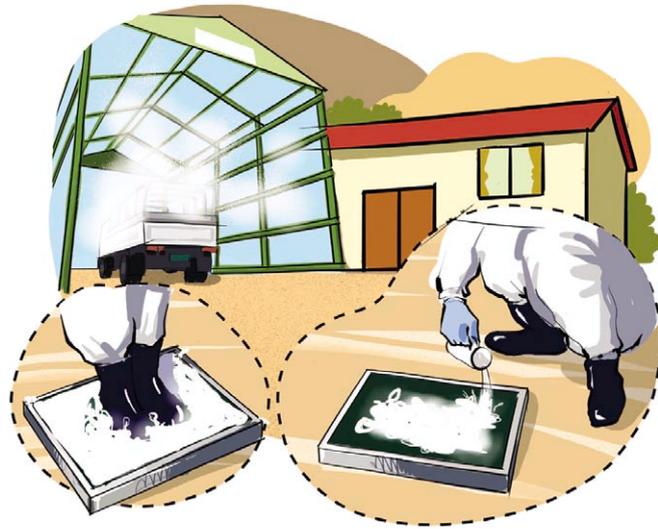
- 차량 소독 시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하고, 차량 내부도 소독수건 등으로 소독할 것
-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축산관련 시설의 개별 준수사항

▶ 도축장

가. 도축장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 가축·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장치 등 설치
-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도축 후에 소독을 실시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

다. 도축장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 도축장의 영업자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독설비의 공통기준 및 개별기준에 따라 설비를 구비하여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
-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우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
-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이 시설내로 출입할 경우 세척 및 소독 실시
-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 실시
-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 차량운전자의 손과 발 및 이들이 접촉하는 부위(운전대,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도 소독
-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집유장

가. 집유장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구비
-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손과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 원유 운반차량이 농장 방문 시 출입 전후에 소독 실시
- 원유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원유 하역후 세차·소독 실시
- 집유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다. 집유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 원유를 운송하는 차량이 시설내로 출입할 경우 세척 및 소독 실시
-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우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 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
-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 실시
-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 차량운전자의 손과 발 및 이들과 접촉하는 부위(운전대,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도 소독
-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사료제조업(공장)

가. 사료제조업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구비
-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 사료 운반차량이 농장 방문 시 출입 전후에 소독 실시
- 사료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운송 후 세차·소독 실시
- 사료공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다. 사료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사료를 운송하는 차량이 시설내로 출입할 경우 세척 및 소독 실시
-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우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
-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 실시
-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 차량내부에 소독수건 등으로 소독 실시
- 차량운전자의 손과 신발 및 이들과 접촉하는 부위(운전대,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도 소독
-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

가.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구비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한 후에 소독을 실시
- 가축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하차 후 세차와 소독 실시
- 가축이 집합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

다.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 운영자의 준수사항

-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이 시설내로 출입할 경우 하역 후 세척 및 소독 실시
-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우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
-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 실시
-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종축장

가. 종축장의 개별기준

-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 구비
-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 당해 시설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 분무기를 구비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 가축 운반차량이 농장 방문 시 출입 전후에 소독 실시
- 가축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가축 상차 후 소독, 하역 후 세차·소독 실시
- 종축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다. 종축장 운영자의 준수사항

- 종축장을 출입하는 사람·차량을 철저히 통제
- 종축장 축사의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손, 신발, 의복 등에 소독 실시
- 종축장을 출입하는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도 소독 실시
- 출입 차량에 대한 외부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내부에 대하여도 발판, 운전대 등 오염 기능부분에 소독 실시
- 종축장에 출입하는 물품(기구 등) 및 사료·원유·동물약품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 소독 실시
- 종축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 축주 또는 관리자를 만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농장 밖에서 만나고, 종축장으로 들어올 때에는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출입
-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부화장

가. 부화장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 부화용 알 및 난좌(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부화실 및 병아리방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손과 신발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면대와 소독조를 설치
-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구비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 부화를 위한 종란 운반차량이 농장 방문 시 출입 전후에 소독 실시
- 종란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종란의 상하차 후 세차·소독 실시
-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에 소독을 실시
- 부화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다. 부화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 부화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 철저히 통제
- 부화장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출입구에 세면대와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손과 신발을 세척·소독 실시
- 부화장을 출입하는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도 소독 실시
- 부화장에 출입하는 물품(기구 등) 및 부화용 란 운송차량에 대하여 소독 실시
- 가금류 수송용기는 차량에서 분리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씻은 후 소독 실시
- 부화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비료제조업)

가. 비료제조업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구비
-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 분뇨 또는 비료 운송차량이 농장 방문할 경우 방문시마다 반드시 소독 실시
- 축분비료공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다. 비료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비료제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소독
- 비료제조 시설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신발 등에 소독 실시
- 비료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종업원이 출입할 때도 소독 실시

- 비료제조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기구 등) 등에 대하여 소독 실시
- 비료제조 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동물병원 및 사료판매상 등

가.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 가축이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출입하기 전과 후에는 사람·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소독 실시
- 진료 또는 사료운송차량이 출입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서도 수시 소독 실시

나. 진료수의사의 방역 준수사항

- 농가를 진료 차 방문할 경우에는 차량을 농가 외부에 주차
- 농가 방문 시에는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손 등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 실시
- 진료 후에는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하며, 일회용 방역복과 장갑 등은 다른 장소가 오염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매몰 조치
- 타고 온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
- 진료 등의 목적으로 다른 농장을 방문할 경우 상기 내용을 반복하여 준수

다. 사료판매상의 방역 준수사항

- 농가에 방문할 경우 출입 전·후에 운반차량 소독 실시
- 사료운반 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
- 만약 사육가축과 접촉된 경우에는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 실시
-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를 실시
-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4 축산농가 출입차량

(1) 가축·원유·동물약품 등 운반차량 운전자의 방역의무

▶ 소독실시의 의무(법 제17조제3항)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반 차량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세부 소독요령은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에 따라 실시
 -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됨



▶ 역학조사 협조의무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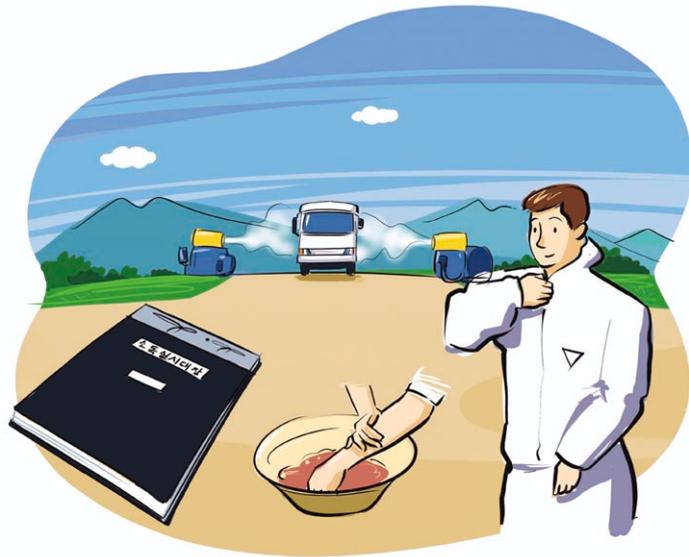
▶ 기록관리 의무

-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함(법 제17조제5항)
 -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 ※소독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2) 소독실시 요령

▶ 소독실시 요령

- 가축사육시설,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 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
- 농가에 방문할 경우 출입 전·후에 운반차량 소독 실시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운반 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
- 만약 사육가축과 접촉된 경우에는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 실시
-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를 실시
-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한 동시에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예” 생석회(알칼리제제)를 도포한 곳에 산성제제의 소독약을 살포하지 않아야 함
-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킬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차량 소독 시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하고, 차량 내부도 발판·운전대·좌석등 오염가능 부분을 소독할 것
-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축산 사업장별 방역지침은 축산농가 등
사업 경영자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합니다.”



【부 록 1】

농림부고시 제2004-9호 (04. 3. 1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제1장 /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독”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소독목적물별·소독대상별 소독방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약물·훈증·증기·물끓임·발효·자외선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독설비”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의 개별시설별로 갖추어야 할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 분무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연막소독기, 소독조 이외에 세척시설, 소독약보관용기·희석용기, 탈의실, 샤워장, 소독실 및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등을 포함한다

제2장 / 소독설비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 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점검) ①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검결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제6조(적용범위) 이 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한 지역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에 적용한다.

제7조(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여건이 소유자 등에 의한 효과적인 소독이 어렵거나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발생농장내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소독조, 샤워장 및 소독기구 등 기본적인 소독설비와 소독실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동통제초소의 운영) ①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동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가축 등 이동제한 대상물건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동제한지역내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행차량중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소독의 효율성과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을 유도할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소독 미 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 ①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 기록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요령의 고시와 동시에 “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 (농림부고시 제1998-5호, '98.2.2)”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점검요령(제5조제1항관련)

1. 소독설비대상별 소독실시기준

소독설비대상	설치기준		소독실시기준
	공통기준	개별기준	
가축사육시설 (30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사람 출입구 소독조 -1000㎡이상 가축사육시설은 사람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관리사무실·사료창고·축사출입구 소독조 	주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300㎡미만 가축사육시설 포함) 계류장·작업실등 도축작업과 직접 연관되는 장소는 매일 청소·소독 실시
도축장	-300~1000㎡ 가축사육 시설은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 분무기 설치로 대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식육 운반차량 세척·소독시설 소독약 보관용기·연결파이프의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가금류 수송용기 세척·소독시설 (가금류도축장에 한함) 	주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집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유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2대이상)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주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사료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2대이상)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주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가축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자 소독조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가축집합 전·후 시설 소독
가축검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자 소독조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가축집합 전·후 시설 소독
종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사람 출입구 소독조 출입자 옷 세척·소독을 위한 탈의실·샤워장·소독실 관리사무실·사료창고·축사출입구 소독조 시설소독을 위한 고압분무기(2대이상) 	주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부화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자 소독조 부화용 알 및 난좌 소독시설 부화실·병아리방 출입구 소독조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알 부화 전·후 소독
축분비료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축분비료 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2대이상) 출입자 소독조 	주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분뇨 운반차량			가축사육시설 등 출입시 차량 소독

(비 고) 소독실시 공통기준 : 소독설비대상별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각 시설은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 실시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천리 727	200-150	033 FAX	243-9581-3 243-9584	춘천, 철원, 화천, 양구
	동부지소	강원도 강릉시 장현동 74-7	210-180	033 FAX	647-6465/6 647-6405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남부지소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098-2	220-170	033 FAX	761-1880/1 -1890	원주, 홍천, 횡성
	중부지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508-153	232-800	033 FAX	332-6926 333-5302	영월, 평창, 정선
	북부지소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649-3	217-130	033 FAX	636-8581 636-8582	인제, 고성, 속초, 양양
축산위생시험소	본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44-53	360-171	043 FAX	220-5621/3 220-5629	청주, 청원
	북부지소	충북 충주시 금릉동 187-12	380-230	043 FAX	853-5500 220-5646	충주, 음성
	제천시소	충북 제천시 고양동 145-20	390-090	043 FAX	220-5647/8 220-5649	제천, 단양
	남부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9	370-800	043 FAX	220-5641/2 220-5643	보은, 옥천, 영동
축산위생시험소	본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52-1	350-820	041 FAX	631-3091 631-3092	보령, 청양, 홍성
	아산시소	충남 아산군 배방면 세교리 432-1	337-850	041 FAX	548-2950 540-2567	천안, 아산
	공주시소	충남 공주시 금흥 190-10	314-140	041 FAX	881-0127 850-4689	공주, 금산, 연기
	당진지소	충남 당진군 용연리 854	343-800	041 FAX	352-4056 352-4055	예산, 당진
	태안지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213-1	357-908	041 FAX	675-4349 675-4348	서산, 태안
	부여지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89	323-800	041 FAX	833-8610 830-2598	논산, 부여, 서천
	본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052-1	560-240	063 FAX	220-6520 220-6511	전주, 완주, 김제, 부안
축산위생시험소	남원지소	전북 남원시 식정동 475-1	590-230	063 FAX	635-5777 635-5778	남원, 임실, 순창
	정읍지소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1	582-810	063 FAX	535-3526 535-9118	정읍, 고창
	익산지소	전북 익산시 월성동 309-7	570-390	063 FAX	834-4918 834-4916	군산, 익산
	장수지소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637	597-800	063 FAX	352-9876 352-9877	무주, 진안, 장수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관할지역	
			DDD	번호		
축산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본소	광주시 광산구 북룡동 89-5	506-555	062 FAX	941-2577/8 -3667	나주, 장성, 담양, 곡성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가곡동 974-1	540-080	061 FAX	755-6396 751-1045	순천, 여수, 여천, 구례, 송주, 광양
	남부지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71	527-800	061 FAX	432-8938 434-8171	강진, 영암, 해남, 완도, 진도, 장흥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59-3	702-210	053 FAX	326-0011-3 -0014	구미, 칠곡, 군위, 성주, 고령, 경산, 영천, 청도
	북부지소	경북 안동시 용성동 458-11	760-803	054 FAX	850-3285 -3289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동부지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143	780-933	054 FAX	748-6684 748-6685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서부지소	경북 상주시 외담동 476-1	742-320	054 FAX	533-1751/2 532-4966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축산위생시험소	본소	경남 진주시 초전동 423	660-360	055 FAX	750-6338 750-6339	진주, 사천, 산청, 하동, 함안, 남해
	중부지소	경남 창원시 용호동 5-1	641-041	055 FAX	211-5773 -5779	창원, 밀양, 진해, 김해, 양산
	북부지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 307-1	678-800	055 FAX	931-3245 930-3382	합천, 거창, 의령, 창녕, 함양
	남부지소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900-1	650-810	055 FAX	646-4395 640-4987	통영, 거제, 고성, 마산
제주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제주시 노형동 315-7	690-180	064 FAX	741-3554 -3572	제주	



축산사업장별 방역지침서 작성 참여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질병방역부	질병방역부장	이주호	총괄관리
방역과	방역과장	임경종	실무 총괄관리
방역과	수의사무관	김도순	총괄계획
방역과	수의주사	장재홍	담당실무
방역과	수의주사	최총렬	담당실무

